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18

발의연월일: 2024. 7. 29.

발 의 자:정점식·박형수·김미애

정희용 • 박덕흠 • 구자근

고동진 · 강선영 · 김태호

장동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,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,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도선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아 취항하는 지역은 도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여객수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, 인구가 적고 선착장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도서 지역은 운항노선이 없어 부득이하게 낚싯배 등을 여객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.

더 나아가 현재 도선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선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 기되어 왔음. 이를 위해 영세 사업자의 지원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우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도 보조금 지원 주체로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 대한 유·도선의 노선을 활성화함으로 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6조).

법률 제 호
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·도선의 안전운항과 공익적 기능수행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드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- 1. 교통이 단절되거나 취약한 도서 또는 오지(奧地)를 오가는 노선 등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
- 2. 영세 유·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
- 3. 노후 유·도선장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6조(보조금의 지급 등) ① 지	제36조(보조금의 지급 등) ① 국		
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	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ㆍ		
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	도선의 안전운항과 공익적 기		
필요한 경우 영세 도선사업자	능 수행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		
의 노후 선박의 교체, 안전시설	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		
의 설치 및 개선, 적자 노선에	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		
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	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		
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	<u>있다.</u>		
로 지급할 수 있다.	1. 교통이 단절되거나 취약한		
	도서 또는 오지(奧地)를 오가		
	는 노선 등 적자노선에 대한		
	<u>손실보전</u>		
	2. 영세 유・도선사업자의 노후		
	선박의 교체		
	3. 노후 유・도선장 안전시설의		
	설치 및 개선	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